

제289회 임시회
2010. 4. 23.(금)

심 사 보 고 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심사보고서

2010. 4. 23.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4월 6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10년 4월 8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10. 4. 19.)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관리실장 우병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지역발전위원회, 2009.9.16)에 의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운용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개정(2010. 1. 1 공포·시행)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함.
- 발전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16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 조합의 명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안 제2조)
-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함(안 제3조)
-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두도록 함(안 제4조)
- 조합은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지방재정 제도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안 제5조)

나.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

- 조합에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두며, 위원은 조합원(시·도)의 기획업무 담당실장(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국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명으로 구성함(안 제6조)

-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 위원중에서 각 1명씩 선출, 임기는 1년으로 함(안 제7조)
- 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중요재산 취득·처분,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그 밖에 조합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8조)

다.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 조합에는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임기 3년(연임가능)의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함(안 제13조)
- 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직원은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함(안 제14조)

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용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용자관리계정은 「지방세법」 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운용하지 아니함*(안 제16조, 부칙 제2조)

* 이는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임

-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며,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함(안 제17조)
- 조합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18조)
- 재정지원계정은 법 제17조의2제3호에 따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운용함(안 제19조)

- 융자관리계정은 법 제17조의2제1호에 따른 예치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법 제18조제1호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등의 용도로 운용함(안 제21조)

마. 기타

- 조합장은 법 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장용대)

- 본 규약안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익을 지방과의 상생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2009. 9. 16)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2010.1.1)하여 16개 시·도가 기금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을 제정,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합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은 16개 시·도를 구성원으로 하며,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지방채 인수,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에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두며, 위원은 시·도 기획업무 담당실장(16), 행정안전부 재정담당국장, 지방재정전문가(2)로 구성하고, 조합규약의 제·개정, 주요사업계획의 수립·변경,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였으며(임기 3년, 1회 연임), 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5조부터 24조까지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발전기금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세입의 35% 출연금(10년간) 등으로 조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보조사업 지원하는 재정지원계정과 지역 SOC 조성사업 등에 융자하는 융자관리계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음.
- 그 밖에 조합장은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발전을 가져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수평적 재원 조정사례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지역 SOC사업 및 일자리창출 사업에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등